

#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6. 25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 6. 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. 6. 7.
- 다. 상정일자 :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13. 6. 25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 제안설명자 :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)

### 가. 제안이유

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폐지 및 제·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와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법 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(안제2조 및 안제6조)

- 토지수용법 →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- 자연재해대책법 →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→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- 감정평가에관한법 →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

2) 띄어쓰기, 문장부호 낫표(「 」) 사용

3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#### 다. 관련법령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### 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- 본 조례는 도시의 건설, 정비,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폐지 및 제·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, 본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조례명 띄어쓰기 및 용어와 문구 등을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한글맞춤법에 맞게 보완·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. 4. 18. ~ 5. 8.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,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